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소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156
----------	-------

발의연월일 : 2026. 4. 7.

발 의 자 : 김소희 · 안철수 · 김미애  
박준태 · 엄태영 · 이종배  
김상훈 · 이현승 · 김기현  
우재준 · 김예지 · 김은혜  
강승규 · 김선교 · 김재섭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에너지 환경 변화와 탄소중립 정책의 확산 속에서 원자력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에너지원으로 재평가되고 있음. 특히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을 중심으로 주요국 간 기술 경쟁과 산업 주도권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원자력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그러나 현행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원자력 이용 전반에 대한 방향 제시에 그치고 있어, 원자력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체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관련 정책을 뒷받침할 재정적 지원 근거

도 명확하지 않아, 지속적인 투자와 인력 기반 확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 그리고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가 해당 분야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자력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인력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5호·제6호 및 제15조의2 신설).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원자력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에 관한 사항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예산 지원) 국가는 원자력 기술 개발, 산업 육성과 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① (생략)</p> <p>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4. (생략)</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5. (생략)</p> <p>③ ~ ⑤ (생략)</p> <p><u>&lt;신 설&gt;</u></p>	<p>제9조(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원자력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u></p> <p>6. <u>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에 관한 사항</u></p> <p>7. (현행 제5호와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u>제15조의2(예산 지원) 국가는 원자력 기술 개발, 산업 육성과 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u></p>